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40

제안년월일: 2023년 6월 16일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원인자부담금의 체납방지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○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함(안 제8조제2항)

○ 시행일을 조정함(안 부칙)

3. 참고사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”로 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(생 략) <신 설>	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	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---------- ---------- --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(생 략) <신 설>	제8조(부담금의 징수방법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